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부패영향평가결과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

○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반영하고,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(**안 제15조제1호**)

○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「도시계획조례」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"사실상의도로"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(군계획위원회 심의기준 완화)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코자 함.(**안 제19조제4항**)

○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
(**안 제53조제3항, 제58조제5항**)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및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반영하고,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하여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.(**안 제12조 제1항, 별표1 내지 별표22, 별표24**)

4. 관련법령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○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조례안 개정이유

○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「건축법」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

○ 관련 조문의 변경과 군수에게 위임된 일부 사항을 보완 반영하고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토지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.

○ 따라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과 관련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

○ 특히 본 조례는 복합민원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조례의 개정 등으로 관련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임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